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약관

제정 2026.03.20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조(약관의 목적 등)

- ① 이 약관은 고객과 키움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 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 이내일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6제3항제2호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 ② “국외상장주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6제1항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말한다.

제3조(계좌개설 및 한도)

- ①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설정하여 회사에 국내시장복귀계좌 개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각 금융회사별로 하나의 국내시장복귀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등에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모든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은 총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국외상장주식의 입고 및 매도)

- ① 고객은 본인이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한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할 수 있으며, 입고 가능한 주식의 범위, 수량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별첨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입고된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첨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고객이 제2항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해당 매도대금은 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된다.
- ④ 고객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한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매도 의사가 없거나, 매도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일반계좌로 재출고할 수 있다.

제5조(국내시장복귀계좌 내 투자)

- ①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금은 제4조에 따라 매도한 국외상장주식의 매도대금으로 한정하며, 고객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현금 등을 추가로 납입(입금 및 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 ② 고객은 제1항의 매도대금을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상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 ③ 고객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국외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현금 및 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 내에서 운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을 인출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이체 출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출)

- ① 고객이 제7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내시장복귀계좌 내 국외상장주식 매도대금을 그 납입일(국외상장주식 매도대금이 원화로 환전되어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금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원화자산 잔고가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출 가능 기간은 각 납입일별로 개별 산정한다.

제7조(과세특례)

- ① 고객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고객이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

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

나.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80%

다. 고객이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

2. 고객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그 밖에 공제금액 산출방식, 공제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이하 '세제관련법규'라 한다)에 따른다.

제8조(과세특례 제한)

제7조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고객이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고객별 국내시장복귀계좌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한도를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한도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또는 전자우편, SMS 등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㉔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세제관련법규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16조(기타)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이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부 칙

(2026.03.20 제정) 이 약관은 2026 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제 4조 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입고 가능한 주식의 범위, 수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입고 가능 주식 범위	(한국시각기준)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상장주식 ② 미국상장ETF
입고 가능 수량 기준	입고가능 국외상장주식 기준 미국상장주식, 미국상장ETF의 보유수량 소수점주식은 온주수량 만큼 적용 ※ISIN/SYMBOL변경, 합병, 감자, 분할에 따른 잔고수량 변경 시 기준일 잔고 내용 반영
타사 입고	입고가능 주식범위/수량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고 가능 단, 소수점잔고는 입고 불가

〈별첨2〉

2. 제 4조 2항의 〈별첨2〉에서 정하는 매도 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매도한도 금액 = 고객설정한도 - 결제완료된 납입금액 -당일 체결/미체결 금액 - 전일 체결 금액

결제완료된 납입금액 = 종목별Σ(해외주식 매도 체결금액 x 결제일자 기준환율)

당일 체결/미체결 금액 = 종목별Σ(당일매도증거수량 x 전일 종가 x전일 기준환율)

전일 체결 금액 = 종목별Σ(체결수량 x 주문 전일 종가 x 주문 전일기준환율)